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27

발의연월일: 2025. 5. 29.

발 의 자:민형배·정동영·김성환

이개호 • 위성곤 • 박지원

김문수 · 김동아 · 소병훈

김현정 · 김재원 · 조계원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주식, 펀드, ETF 등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시민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조기교육' 열풍으로 출산 이후 자녀 명의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9세 이하미성년자 신규 주식 계좌 개설 건수는 한 해 50만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투자 열기는 높지만, 정작 금융 분야 시민교육 기회는 매우 부족합니다. 금융을 가장한 각종 사기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빚을 내어 투자한 청년들은 이러한 사기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하 기도 합니다. 문제는, 현재 각급 학교의 금융교육은 이론 중심으로 실 효성이 떨어지고,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는 금융을 체계적이고 실효성있게 교육합니다. 미국 17개 주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졸업 요건으로 개인금융(Personal Finance)을 필수 이수해야 하고, 5개 주는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과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도 실생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올바른 투자 습관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금융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금융이해도를 높이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금융교육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교육 실시, 금융복지교육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시민들의 금융투자 역량을 강화하고자합니다. 올바른 금융투자 습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금융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 가. 금융교육을 시민이 금융의 중요성과 기본 구조, 금융소비자의 권리 등을 이해하고 금융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금융을 활용한 생활의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나.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국가금융교육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의 금융교육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금융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라. 금융위원회가 학교에 대하여 금융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 마. 금융위원회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 우수학교, 사회 금융교육기관, 금융복지교육사 양성기관, 우수 금융교육프로그램, 국가금융교육센터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15조·제19조·제21조·제24조 등).
- 바. 금융복지교육사 자격요건·지정·교육 및 활동 등 금융복지교육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금융교육 주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아. 금융교육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시민이 금융에 대한 기본 소양과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학습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올바른 금융활동에 대한 역량제고를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금융교육"이란 시민이 금융의 중요성과 기본 구조, 금융소비자의 권리 등을 이해하고 금융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 ・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금융을 활용한 생활의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2. "학교금융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융교육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법인
- 3. "사회금융교육"이란 학교금융교육을 제외한 금융교육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금융교육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 ②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금융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시민은 금융의 기초적 지식과 그 올바른 사용 및 금융소비 자로서의 권리와 책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금융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가금융교육계획의 수립)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금융교육계획(이하 "국 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 등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금융교육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국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금융교육의 목표와 방향

- 2. 금융교육의 현황
- 3.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4. 금융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 5. 금융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 6. 금융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국제협력
- 7. 국가계획에 따른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
- 8. 그 밖에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금융위원회는 국가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금융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시·도 금융교육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금융교육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국가계획 및 시·도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① 금융 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국가계획 또는 시·도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한 실적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한 실적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계획 및 시·도계획의 반영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금융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금융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국가계획의 수립
 - 2. 이전 국가계획에 대한 평가
 - 3.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5. 제11조에 따른 금융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 6. 제21조에 따른 우수 금융교육프로그램의 지정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호선된 민간위원이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금융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금융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국가계획 또는 시·도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학교금융교육의 지원) ① 금융위원회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치원의 학교금융교육에 관한 사항
 - 2.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금융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 3. 학교금융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학교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금융위원회는 학교금융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에 반영하도록 교 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및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1. 학교금융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 2. 금융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그 결과의 보급
- 3. 그 밖에 학교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금융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 중에서 정규 교과과정에 금융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금융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금융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금융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교육 우수학교에 대하여 학교금융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금융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기준, 유효기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교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교육의 전 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금융교육에 관한 연 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 2.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 3. 그 밖에 금융교육에 관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제13조(사회금융교육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사회금융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금융교육
 - 3. 사회금융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금융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금융교육 에 대한 지원
 - 5. 금융교육 관련 전문가에 대한 연수 및 파견
 - 6. 그 밖에 사회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4조(사회금융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사회금융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사회금융교육의 방법 및 교육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사회금융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교육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금융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금융교육기관 중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거나 우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금융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사회금융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법인 또는 단체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금융교육기관 지정을 받거나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사회금융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금융복지교육사) ① 금융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금융복지교육 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금융복지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금융복지교육사 의 자격을 부여하고 금융복지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복지교육사가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 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또는 제339조 의 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 정한다)의 죄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8조 의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 라.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죄
- 3.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③ 금융복지교육사는 금융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업무와 금융교육 제공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금융교육을 체계

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복지교육사를 활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금용복지교육사를 활용하게 할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금융복지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사람은 "금융복지교육사"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금융복지교육사는 다른 사람에게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⑦ 누구든지 금융복지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자격 증을 빌리거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금융복지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복지교육 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 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 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2.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융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금융복지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금융복지교육사의 보수교육)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지

교육사 중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법인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금융교육기관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금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금융복지교육사 양성기관)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금융복지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복지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금융복지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제20조(금융복지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금융복지교육 사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복지교육사 양성기관이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21조(금융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우수 금융교육프로그램의 지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시민에게 다양한 금융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② 금융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우수 금융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한 금융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금융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할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⑤ 금융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우수 금융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표시를 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한 금융교육프로그램에는 제5항에 따른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우수 금융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우수 금융교육프로그램 지정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금융교 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금융교육프로그램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23조(금융교육주간) 시민의 금융교육 의지를 높이고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금융교육주간으로 한다.

- 제24조(국가금융교육센터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금융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1. 금융교육교재 및 금융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2. 국가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 3. 금융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역금융교육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초금융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 5.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6. 그 밖에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국가금융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지역금융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지역 내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광역금융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1. 금융교육교재 및 금융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도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 3. 제2항에 따른 기초금융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 4.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금융교육센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

초금융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금융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금융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금융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광역금융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금융교육센터(이하 "지역금 융교육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금융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지역금융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밖에 지역금융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역금융센터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6조(국가금융교육센터 및 지역금융교육센터의 지정취소) 금융위원 회 또는 시·도지사는 국가금융교육센터 또는 지역금융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게 된 경우
 -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7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교육에 드

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8조(금융교육 실태조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금융교육 실태조사를 매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교육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법인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금융교육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금융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 제19조에 따른 금융복지교육사 양성기관
 - 2.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국가금융교육센터 및 지역금융교육센터
 - 3. 국공립 교육시설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기관 및 협회
- 제30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15조에 따른 사회금융교육기관의 지정취소

- 2. 제17조에 따른 금융복지교육사의 자격취소
- 3. 제20조에 따른 금융복지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 4. 제22조에 따른 우수 금융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 5. 제26조에 따른 국가금융교육센터 또는 지역금융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금융복지교육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 2.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융복지교육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자격 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 제32조(과태료) ①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복지교육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8조를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에 종사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우수 금융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받지아니한 금융교육프로그램에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